

코로나-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[3차] 코호트격리 등록방법

○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[3차 지침 p.4]

- ① 코호트격리 : 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내에서 함께 격리된 경우 1일 8시간,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※ 이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함
- ② 코호트 격리를 한 해당 월에 한하여 급여비용 감액산정이 되더라도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
※ 이 경우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하지 않음.(다만 야간직원배치 가산, 간호사 배치가산은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)

○ 코호트 격리 기간 및 근무시간 등록방법

- ① 가산및감액산정 > 공지사항 등록일 위에 “**코로나19 휴원등록**” 버튼 선택 > 코호트격리 등록 탭 > **코호트격리기간 등록** 및 저장

수가가산 및 산정비용

급여기준년월: 2020-03
급여유형: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
높이조절: +150 px

전 월 운영 [02월] | 당 월 운영 [03월]

가감산 한눈에 보기
고시 개정사항
Q&A

공지사항
번호: 1
휴원 등록: 코호트 격리 등록

지정현황
● 급여유형: 재가노
● 정원: 재가노인복
● 한시적지원금: ~
▶ 시군구에 신고된 장
▶ 지정현황에 대한 문

코호트 격리 등록

2020.03

코호트 격리 등록

1 2 3 4 5 6 7
8 9 10 11 12 13 14
15 16 17 18 19 20 21
22 23 24 25 26 27 28
29 30 31

코호트격리

저장 닫기

완료

② 휴가사유에 “코호트격리” 선택 후 등록 및 저장

※ 등록방법은 현재 종사자 휴가 등록 방법과 동일함

※ 참고사항

구분	코호트 격리*	휴원	예방적 격리**
급여유형	시설급여, 단기보호	주야간보호	시설급여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
전제조건	○ 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내 함께 격리된 경우	○ 휴원 권고에 따라 긴급수요 조사 실시	○ 예방적 격리 ○ 시설장의 판단 하에 일부 종사자를 적극적 업무배제 하는 형태로 유급을 전제로함
적용월	2020.03~04월(급여제공월 기준)	2020.03~04월(급여제공월 기준)	2020.03~04월(급여제공월 기준)
관련 지침	2.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	6.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	1.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

* **코호트 격리** : 감염 수급자·종사자가 발생한 시설 등을 감염병 확산방지 목적으로 수급자·종사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폐쇄 운영하는 격리

** **예방적 격리(예방적 코호트 격리)** :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목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종사자의 근무형태를 조정하여 출입 횟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폐쇄 운영하는 격리(코호트 격리와 다름)